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20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3. 8.

서울특별시의회  
우형찬 의원 (더불어민주당, 양천3)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 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 최근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 및

유포 등으로 인해 학생, 교사·학부모의 불안감 상승은 물론  
2차 피해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,

화장실 및 탈의실 등의 불법촬영에 대한  
근원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며,

□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화장실 시설 및

장비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

화장실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·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는  
안심스크린 등의 설치 및 설치기준에 대한

추가 조문을 개정하여 불법촬영을 통한

범죄 예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- 이에 제명의 경우, 학교 내 화장실 외의 불법촬영 장소를 포함하고자, 기존 ‘화장실 불법촬영’에서 ‘화장실 등의 불법촬영’ 으로 ‘등’을 추가하고,
- 안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화장실 내 설치하는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‘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’ 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5조의 경우 제목을 기존 ‘불법촬영 점검 등’에서 ‘불법촬영 점검계획 등’으로 하며,
- 같은 조 1항의 경우, ‘화장실에서의’를 ‘화장실 등에서의’, ‘화장실 불법촬영’을 ‘화장실 등의 불법촬영’으로, 같은 조 3항의 경우, ‘화장실’을 ‘화장실 등의’로 하며,
- 안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, 교육감의 역할인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계획 등과 관련해

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,  
사업 위탁 시,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 
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.

- 또한,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,  
‘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’을  
상위법 개정에 근거해 규정하였습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 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 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